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

장 충 동 장



1. 대상자

대 상 자		세대주 성명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 명	생년월일			
최*지	2001-01-08	최*열	2018-02-01 ~ 2019-01-31	등기우편 반송
김*이	2001-01-22	김*래	2018-02-01 ~ 2019-01-31	등기우편 반송
최*석	2001-01-22	정*봉	2018-02-01 ~ 2019-01-31	등기우편 반송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18. 2. 2. ~ 2018. 2. 26.

4. 준비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cm×4cm 또는 3.5cm× 4.5cm)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담당자 : 정영주, 전화번호 : 02-3396-6624)